

의안번호	2219564
의 퇴 인	김용민의원
회 답 일	2026.8.14.
추계번호	26D3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6조(수사 인권보호관)	-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장 강화를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둠 - 수사인권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201조 (구속 및 조건부 석방)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01조의3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및 송부)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도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221조의제1 항(제3자의 출석 요구 등)	-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그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할 수 있음 - 해당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함	재량규정
5	안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 상녹화)	피의자 진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246조의3 (공소심의회의 설 치)	-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둠 - 공소심의회는 심의위원후보예정자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 심의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	의무규정
7	안 제246조의6 (의결 등)	지방법원장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공소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6조(수사 인권보호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01조 (구속 및 조건부 석방)	
3	안 제201조의3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및 송부)	
4	안 제221조의제1 항(제3자의 출석 요구 등)	
5	안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 상녹화)	
6	안 제246조의3 (공소심의회의 설 치)	
7	안 제246조의6 (의결 등)	

2. 상세 사유

□ 수사인권보호관(안 제195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참고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음¹⁾

1) 2026년 예산 기준 '군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으로 4억 8,800만원 편성

-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겸직하고 있고 임기는 3년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 및 직위 등을 예측할 수 없고 군인권보호관과 개정안에 따른 수사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 업무량 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구속 및 조건부 석방(안 제201조 신설)

-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 예상
 - 법무부는 ‘전자감독’사업으로 전자장치 부착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운영,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구매 등을 수행 중이며, 개정안에 따라 형집행정지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전자장치 구매, 관리업무 증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다만,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수, 전자장치 부착 평균 기간 등이 필요하나, 구속영장 발부 대상 중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대상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2021~2025년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및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구속영장 발부 현황: 2021~2025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청구 및 신청	28,210	29,000	34,434	36,626	37,669
발부	18,064	18,352	20,882	21,469	21,862

자료: 법무부 「2025 법무연감」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및 송부(안 제201조의3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도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으로 송부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적 방식과 서면 중 각각의 방식에 따른 송부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2022~2026년 연도별 형사일반사건 송달료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2] 형사일반사건 송달료: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형사일반사건 송달료	5,360	5,518	5,777	5,777	4,853

자료: 대법원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

□ 제3자 또는 피의자 진술의 녹음(안 제221조 및 제244조의2)

- 개정안은 제3자의 진술을 들을 때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뿐 아니라 녹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또한, 영상녹화 하지 않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 녹음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녹음장비 구매 및 설치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영상녹화장비에 음성녹음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할지, 별도의 음성녹음장치를 설치할지 등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곤란함

□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46조의3)

-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설치되는 공소심의위원회는 무작위로 추출한 100명 이내 후보예정자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9인으로 구성되므로, 외부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 참고로, 2026년 기준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20만원²⁾, 안전검토수당은 각 기관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위원회의 경우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³⁾에서 1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다만, 공소심의위원회는 기소 및 불기소 적정성,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 검사의 각종 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데, 이에 따른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연도별 검찰청의 기소 및 불기소 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연도별 기소 및 불기소 건수: 2021~2025년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소		2,084,164	2,074,336	2,177,050	2,473,924	2,427,328
불기소	소계	477,541	498,582	507,028	539,701	495,528
	무혐의	85,493	79,957	86,707	91,972	96,126
	기소유예	197,405	220,235	203,312	190,777	173,507
	기소중지	77,564	83,471	80,866	79,294	72,981
	참고인중지	1,016	700	630	547	459
	각하	40,109	39,543	52,654	71,623	59,306
	기타	75,954	74,676	82,859	105,488	93,149
보완수사요구		199,901	157,801	149,205	160,194	157,637
이송		229,363	198,258	206,796	243,848	241,394
불제사건 ⁴⁾		468,216	513,559	573,702	750,992	784,107
중제사건 ⁵⁾		102,596	97,300	100,424	125,273	142,698

자료: 법무부, 「2025 법무연감」

- 2)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3)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불제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 5) 중제사건: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 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안 제246조의6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소업무를 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변호사의 보수 또는 수당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지정변호사의 지정변호사의 보수 및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0년~2024년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인원 수는 다음과 같음

[표 4] 연도별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 결정인원: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인원	28,883	17,295	14,486	21,139	25,353
결정인원	167	116	86	121	124

자료: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